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50509] [www.kozel.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5-06-1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1-06]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케이디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디코리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1 길 72. 범천빌딩 1 층]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02-6713-0910]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6713-091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본부 / 02-6713-091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4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4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1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9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1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3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78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케이디코리아	코젤다크하우스 (KOZELDARKHAUS)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1 길 72 범천빌딩 1 층 (공항동 18-78)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09.12	2013.09.23	장현분	02-6713-0910	02-6713-0911
	법인등록번호	110111-5226330	사업자등록번호	113-86-75776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최근 3 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장현분 (주식회사 케이디코리아)	코젤다크하우스 (KOZELDARKHAUS)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1 길 72 범천빌딩 1 층 (공항동 18-78)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장 현 분	02-6713-0910	02-6713-091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선영	코젤다크하우스 (KOZELDARKHAUS)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1 길 72 범천빌딩 1 층 (공항동 18-78)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6713-0910	02-6713-091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최근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코젤다크하우스]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코젤다크하우스	KOZELDARKHAUS(코젤다크하우스)는 KOZEL 흑생맥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상 호	코젤다크하우스 OO 점	해당 지역명 표기
상표(서비스표)	KOZEL DARK HAUS	등록 : 45-0055652
상표(서비스표)	코젤다크하우스	등록 : 45-0055653
상표(서비스표)		등록 : 45-0056429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 년	90,390,024	125,755,581	-35,365,557	226,323,134	-104,405,246	-93,509,708
2022 년	105,864,793	123,035,222	-17,170,429	326,764,010	1,292,452	18,195,128
2023 년	104,757,581	122,570,794	-17,813,213	300,083,014	-3,543,140	-642,784

2) 당사의 2021 년도 재무현황은 [별첨 1 및 별첨 1-1] 을, 2022 년도 재무현황은 [별첨 2 및 별첨 2-1]을, 2023 년도 재무현황은 [별첨 3 및 별첨 3-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장현분	대표이사	2012.01~2016.12	(주)엠코리아 영업 이사	영업 총괄
	이선영	이사	2009.04~2012.04	(주)씨엔에프알티에스 이사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2 12 월 31 일	2	0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허락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코젤다크 하우스 (상표권)	가맹점 상호로 사용	등록 2015.04.17	등록 45-0055652 등록 45-0055653	주식회사 케이디코리아	
		등록 2015.05.26	등록 45-0056429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사업 현황

1.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사업 시작일

코젤다크하우스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13년 09월 25일 입니다.

2. [코젤다크하우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케이디코리아	코젤다크하우스 (KOZELDARKHAUS)	구용회	2013.09.17 ~ 2014.04.09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9-9 KM타워 4층
주식회사 케이디코리아	코젤다크하우스 (KOZELDARKHAUS)	이종인	2014.04.10 ~ 2018.05.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5, 205호 삼익플라주상가 (당산동 4가, 당산동 삼익플라주아파트
주식회사 케이디코리아	코젤다크하우스 (KOZELDARKHAUS)	장현분	2018.05.18 ~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21길 72

3. [코젤다크하우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코젤다크하우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주점	생맥주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5	15	-	15	15	-	13	13	-
서울	7	7	-	7	7	-	6	6	-
부산	4	4	-	4	4	-	4	4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1	1	-	1	1	-	0	0	-
대전	0	0	-	0	0	-	0	0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	2	-	2	2	-	2	2	-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점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9	1	-	5	0	15
2022	15		-		-	15
2023	15			2		13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www.kozel.co.kr)를 확인하십시오.

6. [코젤다크하우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당사는 [코젤다크하우스]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18. 12.31	2019. 12.31	2020. 12.31

*해당 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방법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위 연간 평균 매출액은 2023년 01월부터 12월까지 영업을 한 점포를 기준으로 방법 2)를 이용하여 산정되거나 혹은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평균 매출액을 추정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비고: (충북지역 1 개매장의 매출은 점주매출확인 부동의로 총액에서 제외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3 항·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코젤다크하우스] 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3	약 2208 일(60.5 개월)

계산방식) 가맹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발행 날짜와 실제 매장 운영을 시작한 날짜와의 차이가 있는 매장들이 있는 관계로 최초 가맹계약서 작성한 다음달 1일부터 날짜 계산.

예를 들어 2013 년 11 월 오픈 매장은 85 개월로 계산하여

(85 개월/12 개월) * 365 일 = 약 2585 일로 계산하였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소			
	대표자	대표전화		관리 가맹점수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1 년]에 [코젤다크하우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7~3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	-	
	-	-	-	-	-	
광고	-	-	-	-	-	
	-	-	-	-	-	
판촉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미래채널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 2가)	02-2151-3996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에서 제공하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항 목		내 용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가. 가맹금예치신청서 교부(당사 제공) 나. 은행방문 다. 가맹금예치신청서 접수 라. 신한은행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상계좌 발급 마. 가맹점사업자가 가상계좌에 가맹금 입금 바. 신한은행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완료 및 가맹금예치증서 발급
	인터넷 뱅킹 이용시	가.개인인터넷뱅킹 이용중인 경우 가맹금예치신청서 교부 필요 없음. 나.인터넷뱅킹(http:// http://www.shinhan.com/)접속 다.좌측에(개인인터넷뱅킹>금융서비스>기타서비스>가맹금예치제서비스-> 신청하시고 부여 받은 가상계좌에 입금하시면 완료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가. 신한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가.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나. 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가.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나. 신분증 다. 위임장 라. 개인인감 증명서 마. 대리인 신분증

● 신한은행 가맹금 예치서비스 이용 요령



- 가맹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행의 인터넷 뱅킹 가입과 공인 인증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예치서비스 업무는 인터넷 뱅킹에서 제공되며 가맹계약 현황 및 예치금 입금 내역, 예치금 진행 현황 등 예치 가맹금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 및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금의 지급요청, 지급승인, 지급보류, 환불요청, 환불승인 등의 관리 업무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등록 하셔야 하며, 신한 은행 영업점에서는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2021년도가맹사업거래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 계	13,200,000				
가맹비	11,000,000	계약 체결 후 즉시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1. 가입비 2. 선정 점포 실사의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인력지원의 대가(매뉴얼 포함) 4. 개점 전 교육비
교육비	2,200,000	계약 체결 후 즉시	교육 시작 1 일 이전에 계약 해지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2)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3)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원 부가세포함)
합계	13,200,000
가맹비	11,000,000
교육비	2,20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4 ~ 별첨 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99m² 기준 (30py)]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비고
----	------	----	---------------------------------	------	----------	----

총계		약 86,500,000	2,883,333			
인테리어 (점포내부공사)	협력업체	약 45,000,000	1,500,000	공사착공시	공사 전 계약 취소	
간판		약 5,000,000	166,666	40%		필수설비
실내(홀)집기		약 10,000,000	333,333	착공 후		
주방/Bar 기기		약 16,500,000	550,000	15 일후 30%		
주방집기 (그릇류 외)		약 5,000,000	166,666	공사완료시 30%		
초도물품	주류,식자재	약 5,000,000	166,666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 세 이상일 것
종업원	별도 규정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별첨4~별첨9]와 같습니다.

8)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원)		총액의 10%	30%	30%		3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5 일	계약일+1 월		계약일+2 월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7P~38P]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또는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 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매월 판매금액의 2%	매달			영업표지의 사용 대가 및 영업지도관리 등에 상응하는 대가의 로열티. 가맹 본부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의 설비 및 물품공급을 받을 경우 로열티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이후 수시교육비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개정 이후 특별교육비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단 조리 교육의 경우 1 회 당 500,000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 되지 않음
개정 이후 재교육비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가맹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가맹본부	광고의 성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33,000	매장마다 상이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이율 (20%)	지급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지급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 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

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1년도에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코젤다크하우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코젤다크하우스]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3~34p]에 나와 있습니다.

4) 경업금지 기간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코젤다크하우스와 같거나 비슷한 업종(타사 가맹점 및 독립점포)을 경영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코젤다크하우스와 같거나 비슷한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6)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코젤다크하우스]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다) 협력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 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합니다.

라) 계약 종결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공급품을 반환 청구 할 수 없지만 당사와 협의하여 반환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바) 영업비밀(매뉴얼, 계약서, 전산 자료, 홍보 등) 보호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요구/권유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해당 품목(193종)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1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자세한 상품·용역 품목은 별첨 11 참조

* 현재 식자재 배송을 구로상사와 케이디코리아에서 나눠서 배송하고 있으며 구로상사 물품을 케이디코리아에서 배송하는 매장에 대해서만 경제적 이익 수취.

- 2) 당사가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 9의 초도물품과 이를 원부재료로 당사가 제공한 레시피에 의하여 조리한 상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 서면 경고 2 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3 회 이상 위반 : 물품공급 중단 후 가맹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1 회 위반 : 서면	

타 가맹점 또는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기재된 제품은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시정요구 2 회 이상 위반 : 물품공급의 중단 후 가맹계약 해지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0 1.0 1.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이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가격통보 방법은 각 매장별 개별 공지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코젤흑생맥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	코젤다크하우스	X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내 (단, 하나의 상권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 - 계약서와 규정내에서 홍보 및 영업활동이 가능함	1 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 회 위반 : 물품공급의 중단 후 가맹계약 해지 예고 3 회 위반 : 가맹계약 해지	- 가맹점사업자들간 영업지역 침범행위는 당사자들의 이해와 합의를 우선시하며 당사의 개입을 최소화 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민사적인 해결에 앞서 당사 규정에 입각한 제재요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코젤다크하우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재계약(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코젤다크하우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

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6 계약의 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코젤다크하우스]의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 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계약 갱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나.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다.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부터 90 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 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3항 1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게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7조 3항 2호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 3항 3호 가목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 3항 3호 나목
[코젤다크하우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 3항 3호 다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조 3항 3호 라목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가맹점사업자명의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25 조 1 항	31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5 조 2 항	
가맹본부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표지를 훼손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25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에 대한 금전의 납입을 2 회 이상 연체하거나 지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25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수시교육 및 재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2 회 이상 거부할 경우	25 조 5 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25 조 6 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로 하여금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5 조 7 항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 개월에 걸쳐 3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5 조 8 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5 조 9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5 조 10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5 조 11 항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5 조 12 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교체를 요구·권유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25 조 13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5 조 14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및 제공의무를 3 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25 조 15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5 조 16 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25 조 17 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판촉활동을 하거나 KozelDarkHaus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5 조 18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사전 승인 없이 제 35 조 제 1 항의 “영업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5 조 19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20 항	
가맹점사업자가 제 2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 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 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5 조 21 항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초기 가맹금 예치와 초기 투자금 납입금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 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 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조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1조 3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1조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31조 4항 각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 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1 조 4 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1 조 4 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1 조 4 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1 조 4 항 각호

그밖에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호합의 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가맹본부 (02-6713-091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교육비(₩10,000,000)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대행행사,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직계존비속)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특별한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 후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	-------	----	---------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 검토 → 승인여부통지 → 가맹계약체결 → 상 속완료	교육수료
대리행사	불가	-		
업무위탁	불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코젤다크하우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맥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본부 (02-6713-0910)

동일한 업종의 영업이라 함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경우 당사는 당사의 가맹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물품공급중단, 영업정지, 계약해지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코젤다크하우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6:00 ~ 익일04:00	5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음	문의: 가맹본부 (02-6713-09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일수(휴무일수)는 가맹점수익과 직결되므로 연중무휴를 권장합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권장 근무 인력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99.174m ² 이상 (30py)	3인 이상	직접 또는 교육이수자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교육이수자	
165.289m ² 이상 (50py)	5인 이상			
231.404m ² 이상 (70py)	6인 이상			
330.578m ² 이상 (100py)	7인 이상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부서
Bar(바)	라인관리 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 이상 / 1개월	당사 S/V 및 매장관리팀
	타생맥주판매여부			
	기자재관리상태			
	Keg 보관상태			
Hall(홀)	직원복장상태			
	규정소품확인			
	매장행사여부			
Kitchen(주방)	규정OEM제품확인			
	사용제품유통기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방문 기록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가 보관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유지기록하고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유지하고 당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 비용은 광고 실시 2주 전 가맹 본부의 통보에 따라 광고 실시 1주전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하되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집계한 원·부자재의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	광고 계획 공고 → 가 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 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가맹점 단독광고	없음	전액부담		
개별 행사	판촉	기획 비용	제작 비용	행사 계획 공고 → 가 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 행사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공동의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물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제작 비용은 실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 밖의 판촉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제17조)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가맹계약서 제33조)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밀유지 의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별로 금오백만원(W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품중 가맹본사가 인정한 품목 이외 자점매입을 한 경우 위약별로 (W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 처리하거나 코젤다크하우스(KozelDarkHaus)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위약별로 원(W5,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삼십만원(₩300,000 원)씩 지불하여야 한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상담 기간은 각 개인마다 편차가 있음	공사진행 후 30~40 일	14P ~ 15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6713-0910).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즉시	-
1 차 상담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즉시	-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	제공 14(7)일 후 가맹계약	-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제공 14 일 후 가맹계약	-
가맹 계약 및 가맹금 예치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3,200,000 (VAT 포함)

	-가맹금 예치 (가맹금 예치에 대한 안내 및 가맹금예치신청서 교부)	14 일 후	(가맹비 11,000,000 교육비 2,200,000)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5 일	-
도면 및 견적서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및 견적서 확인	3 일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30 일	착공 시 착수금(40%)/ 착공 후 15 일 중도금(30%)
기타 물품 입고	- 기타 물품 입고	2 일	/공사 완료시 잔금(30%)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5 일	최초 예치
오픈	- 오픈 리허설 - 오픈닝 행사	즉시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귀하는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1)예치 가맹금의 범위]에 기재된 가맹금을 당사에서 교부하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한은행] 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8. 가맹금 예치기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 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개선 시 비용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 차 : 청구일로부터 9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 차 : 2 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 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지원	오픈일로부터 2일간	-	가맹희망자부담
개점 오픈	오픈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인원 수 차등지원	오픈전일로부터 2일간	인원 지원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 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매장 정기 방문시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사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사업본부 (02-6713-091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 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매장 정기 방문시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및 경영개선방안을 제사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사업본부 (02-6713-091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코젤다크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원 VAT포함)	피교육자	비고
신규 교육	총 70시간	2,200,000	가맹점주 및 종업원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2.영업중의 부담 참조	기본 교육 무료 기타 교육 비용 발생	상동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02-6713-091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2021 년도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1(2021 년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2022 년도 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1(2022 년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2023 년도 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1 (2023 년도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용역(POS, CCT 사용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5 설비(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6 설비(간판, 배기, 가구)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7 설비(주방/BAR 기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8 상품(주방식기 및 집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9 원부재료(초도물품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0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1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11 가맹점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 홈페이지 참조 (www.kozel.co.kr)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내용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해당내용없음